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교회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자 판결(2005가합1895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김제○○교회(이하 원고 교회)와 이 교회 담임목사 김○○ 목사(이하 원고 목사)가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인터넷 신문)와 교회 신도인 문○○ 부자(父子)(이하 피고 신도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는 피고들이 특정 교회나 특정 목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에서 종교, 특히 교회가 차지하는 기능 및 중요성에 비추어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의 문제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 이 사건 기사를 보

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사(修辭)적인 과장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여, 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표현방법 또한 모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관련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교회와 원고 목사는 피고 신도가 피고 인터넷 신문 제보란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담임목사 연봉이 124,200,000원입니다’ 라는 내용을 제보하고 이에 피고 인터넷 신문사가 2005년 1월 20일자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 원?』 제하의 기사 등을 통해 원고 목사의 역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원고 교회가 들쭉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 교회 신도들이 원고 교회와 원고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 목사의 연봉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피고 인터넷 신문에 제보했고 피고 인터넷 신문은 원고 교회가 내분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 교회와 원고 목사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듯한 내용의 보도를 하는 등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판 결 문**

- 사 건 : 2005가합18950 손해배상(기)
- 원 고 : 1.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교회  
대표자 김 ○ ○  
2.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배
- 피 고 : 1.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대표이사 오 연 호  
2. 조 ○ ○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3. 문 ○ ○  
4. 문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 태 진, 차 현 환

- 변 론 종 결 : 2006. 4. 7.  
판 결 선 고 : 2006. 4. 21.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교회에게 금60,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은 1999. 7.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를 관리·경영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조○○은 피고 신문사의 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편집·게재한 사람이고, 피고 문○○은 원고 교회의 시무장로인 사람이며, 피고 문□□은 피고 문○○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및 그 내용

피고 신문사는 2005. 1. 20.에 발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넷신문에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 원?>이라는 대체목 및 <전북 J교회 담임목사의 연봉 내역을 공개합니다>, <교회 예산 20% 담임목사가 차지... 청소원 연봉은 1천 만 원대 20배 차이>, <미국자

너 학비 지원 중단해야 - 계속 줘야... 미 시민권 포기 논란도)라는 중제목으로 담임목사의 역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한 교회가 들썩이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 다. 피고 문□□의 제보

피고 문□□은 “오마이뉴스” 제보란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담임목사 연봉이 124,200,000원입니다’라는 제목을 온라인 통신으로 송부하고, 피고 조○○의 전화취재에 응하면서 팩스로 원고 교회의 2004년 및 2005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툴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문○○은 원고 김○○의 교회 운영 방침에 불만을 가지고 원고 교회의 내분을 야기한 자로서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 교회의 내부 문서인 세입세출예산서를 절취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 문□□에게 전달하고 피고 문□□과 공모하여 담임목사의 연봉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피고 조○○에게 제보하였으며, 피고 신문사와 그 소속기자인 피고 조○○은 원고 교회가 내분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 김○○이 소도시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이나 쟁기는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원고 교회도 그러한 부도덕한 목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피고 문○○은 이 사건 보도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전북 J교회’, ‘담임목사 김 아무개’라고만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설사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 재정에 관한 비평의 일환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에 기초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 가. 피고 문○○의 개입 여부

먼저, 피고 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문○○이 원고 교회의 내부자료를 절취하고 피고 문□□과 공모하여 피고 신문사, 피고 조○○에게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제보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사에서 비록 원고들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원고 교회를 ‘전북 J교회’, 원고 김○○을 “담임목사 김아무개” 또는 “김 담임목사” 등으로 지칭하였으나, 그 기사내용이 미국 시

민권을 가지고 있던 김 목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에 부임하여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는 등의 취지이고 원고 교회의 전면부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 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기사에서 말하는 “김 목사”가 원고 김○○을 지목하는 것이고 “지방소도시 교회”가 원고 교회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 다. 위법성조각여부

살피건대,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은 이 사건 기사에 연이어 “목사연봉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라는 제목 하에 서울 “높은 뜻 승의 교회”의 목회자의 적정연봉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사례와 기독교방송의 목사 연봉에 관한 설문조사사례, 시

민종교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 관계자의 의견 등을 취재하여 별지 제2목록 기사를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피고들이 특정 교회나 특정 목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생활에서 종교 특히 교회가 차지하는 기능 및 중요성에 비추어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의 문제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3,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 증인 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은 피고 문□□을 통하여 원고 교회의 2004년 및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라는 구체적인 문건을 입수하고 원고 교회의 장로 및 권사들로부터 원고 교회의 재정운용상황 등을 취재하고 원고 김○○과도 전화통화를 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원고 교회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

출예산서'에는 세입예산총액이 1,058,000,000원으로 이 전부 교인들의 헌금에 의하여 조성되는데(헌금 이외의 기타 수입은 40,000원에 불과하다), 세출예산 중에 담임목사(원목)의 생활비 54,400,000원, 목회비 6,000,000원, 연구비 6,000,000원, 도서비 4,800,000원, 여비 3,600,000원, 수양비 1,200,000원, 자녀학비보조비 49,200,000원(특별 30,000,000원, 원목 19,2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위 예산서상 교육목사의 교육비(연봉)는 13,200,000원, 교육전도사의 교육비(연봉)는 18,000,000원 또는 8,400,000원, 사무직원의 생활비는 16,000,000원, 차량기사의 생활비는 21,440,000원 또는 17,600,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청소원에게는 급여로서 연 10,000,000원 정도가 지급되는 사실, 예산서상 행정관리비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접대비 10,000,000원, 축조위비 7,000,000원, 정보통신비 5,000,000원도 사실상 담임목사가 그 용도에 따라 지출하고, 예산서상 원고 교회 보유 차량, 시설, 사택 등에 대한 재산관리비로서 121,48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고 교회는 담임목사인 원고 김○○에게 그랜저XG 승용차 1대와 30평대 사택을 제공하면서 그 유지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위 재산관리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 온 사실, 2005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004년도의 그것보다 감소되었지만 목사생활비, 교역자 연구비, 교역자 도서비 등은 오히려 증액 편성된 사실(세부적으로는 부목사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것이다), 원고 교회는 2003년부터 재산운용방법(중학교 인수 문제 등) 등을 둘러싸고 내부의 갈등을 빚어오다가 2004. 10.경에는 원고 교회의 장로 10여 명이 원고 김○○의 미국 시민권 포기 약속위반, 독단적인 부서 임원 임명, 처리권(징계권) 남용 등의 이유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역노회에 고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피고 조○○의 이 사건 기사 취재경위, 원고 교회의 공식적인 예산서에 기재된 예산편성내용, 원고 교회의 담당위원회가 재미 유학 중인 원고 김○○의 자녀교육비로서 연간 30,000,000원(15,000,000원 씩 2회)을 4년 동안(대학졸업시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한 시점이 2001년 초경(갑 제4호증)임에 비추어 2005년도에는 통상적인 대학 수업연한을 초과하였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적시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교회의 경우 교인들의 헌금으로만 운영되는 교회인데 담임목사인 원고 김○○ 개인의 생활 및 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원고 김○○이 미국 시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문제 등이 원고 교회의 내부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그 문맥 중에 '연봉 2억원', '총예산 중 20%를 담임목사가 가져간다', '청소원의 연봉은 담임목사와 20배 차이' 등 수사(修辭)적인 과장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여, 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표현방법 또한 모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관

련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섭  
판사 황인경  
판사 이영남

□

판결 2

**언론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한 공익적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자 판결(2005가합26111)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국내 대학생들을 송출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T사가 SBS(이하 피고 방송사)와 T사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이하 피고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방송사가 몰래 촬영한 부분의 경우, 원고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우며 원고회사를 문제있는 업체로 묘사하였다는 주장 역시 시청자들에게 해외 인턴십을 알선하는 업체들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최근 청년실업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해외 인턴십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등을 다룬 것으로서 그 보도목적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가, 피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가해업체가 원고회사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방송사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방송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 방송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

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 경위가 어떠한 피고 학생들이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의 본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게 미국에서 주로 허드렛일만을 하고 돌아온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 학생들이 이메일과 전화로 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한 행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행위 등은 타인에게 자신들이 실제 경험한 내용과 피해사례를 호소한 것이거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피고 학생들이 피고 방송사와 몰래 원고회사를 취재한 행위 및 피고 방송사에게 자신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경우 피고 방송사가 몰래 취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 따라서 피고 방송사가 명예훼손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와 피고 학생들이 2005. 2. 1.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 ‘우리는 노예였어요’ 제하의 보도에서 피고 방송사가 피고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초하여 피고 학생들과 원고 회사의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편집·방송하고 원고회사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피고 학생들은 원고회사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수차례 원고회사를 비방하면서 원고회사가 주선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고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회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

지의 비방전화를 하였으며 피고 방송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 방송사와 공모하여 원고회사를 몰래 취재하는 등 원고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26111 손해배상(기)등  
원   고 : T 사(대표자 이사 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영 진  
Ⅲ  고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센터  
          대표이사 안 국 정  
          2. 김 ○ ○  
          서울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센터  
          보도국 뉴스추적팀  
          3. 윤 ○ ○  
          4. 서 ○ ○  
          5. 송 ○ ○  
          6. 윤 ○ ○  
          7. 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변 론 종 결 : 2005. 12. 23.

판 결 선 고 : 2006. 1. 20.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20:50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정정 보도문'이라는 제목과 '[우리는 노예였어요]의 보도비리에 관하여'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기재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이 판결 확정 후 15일 이내에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회사는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국내 대학생들을 송출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는 'SBS 뉴스추적'이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방송사이며, 피고 김○○는 피고 방송사 소속 기자이고, 피고 윤○○, 피고 서○○, 피고 송○○, 피고 윤○○, 피고 박○○(이하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은 국내 대학에서 호텔경영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현재 재학 중인 사람들이다.

#### 나. 피고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참여

(1) 피고 학생들은 미국에 소재한 호텔, 리조트 등이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2003. 10.경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알선 대행료로 약 480만 원 상당을 각 지불하고 원고회사에 미국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절차와 수속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회사의 해외 담당직원 소○○는 2003. 11.경 피고 학생들에게 미국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 알선업체가 보내 온 미국 뉴멕시코주 Ranton 소재 버매조 파크 랜치(Vermejo Park Ranch)의 고용제안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5, J-1 Trainee Program Offer Of Employment) 및 버매조 파크 랜치의 트레이닝 플랜(갑 제2호증의 1 내지 5, Training at Vermejo Ranch)을 각 제시하면서, 피고 학생들에게 '위 버매조 파크 랜치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고급리조트이고, 비록 기간은 기본 12개월보다 짧은 8개월이지만, 프론트 데스크, 고객센터에 관련된 부서, 식음료부서, 하우스키퍼 부서, 소매업 관련 부서 등 여러 부서를 순환근무하면서 리조트경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익힐 수 있고, 유급으로 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주었다.

(3) 이에 피고 학생들은 원고회사가 알선한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고, 2004. 3. 25.경 미국 현지에 도착하여 같은 달 30.경부터 버매조 파크 랜치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피고 학생들에게는 잔디관리나 쓰레기처리, 접시 닦기, 주방청소 등과 같은 업무만이 맡겨졌고, 프론트 데스크나 식음료부서 등으로의 업무순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 학생들은 버매조 파크 랜치의 담당자로부터 위 고용제안서나 트레이닝 플랜의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 학생들이 다른 부서로 순환 배치되어 손님 접대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2004. 6.경

원고회사에게 비자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순환이 가능한 다른 인턴십 업체를 알선하여 주거나, 알선비 중 일부를 환불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5) 원고회사는 피고 학생들에게 다른 인턴십 업체를 소개하여 주었으나, 피고 학생들 중 일부가 이를 거부하여 다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은 결국 무산되었고, 이후 피고 학생들이 알선비 중 일부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 방송사의 이 사건 방송 및 그 내용

(1) 피고 학생들은 2005. 1.경 원고회사를 찾아가 피고 학생들이 버매쥬 파크 랜치에서 업무순환 없이 허드렛일만을 하다가 돌아 온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알선비 중 일부를 환불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회사의 담당직원 소○ ○는 ‘피고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리한 내용이었고, 부서의 배치전환은 현지 업체인 버매쥬 파크 랜치의 고유권한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오○○ 역시 피고 학생들이 요구한 미국 비자의 연장을 통한 다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환불 등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피고 방송사 소속 성명불상의 기자는 피고 학생들의 친척이라고 자신을 거짓 소개한 후 원고회사 측과 피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내용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 방송사는 2005. 2. 1. ‘SBS 뉴스추적’을 통해 “우리는 노예였어요”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해외 인턴십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

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김정은(가명)이 유치원교사로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로 갔으나, 실제로는 유치원교사가 아니라 보모로 일하였다는 피해사례 및 피고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호텔관광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으나, 실제로는 잔디관리, 주방보조업무 등 허드렛일만 하고 돌아왔다는 피해사례(피고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내용을 방송하였다)를 각 소개하는 내용

② 김정은의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국내 인력양성업체가 김정은 씨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호주의 현지 알선 업체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내용

③ 노동부에서는 등록된 업체인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나, 현행법상 직업소개업과 노동부 등록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고, 해외 인턴십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이 노동부 등록업체도 등록이 어렵지 않음을 이용하여 이름만 바꾸어 계속 피해를 주고 있어 등록된 업체라고 해서 신뢰하기 어렵고, 더욱이 무등록 업체까지 난무하여 여권을 위조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

④ 해외 인턴십의 성공사례로서 서강대학교과 무역협회의 인턴십 프로그램 내용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해외 인턴십에 성공하려면 사전에 많은 준비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내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5 내지 10의 각 기재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는 원고회사를 정당하게 취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초하여 피고 학생들과 원고회사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편집·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회사가 환불도 해주지 아니한 채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묘사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원고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학생들은 원고회사가 업무순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자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버매조 파크 랜치의 고용제안서 및 트레이닝 플랜에 인턴 학생들의 업무순환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피고 서○○은 2004. 7.경 버매조 파크 랜치에서 레스토랑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업무순환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다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실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업무 순환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학생들은, ① 피고 학생들에 뒤이어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수차례 원고회사를 비방하면서 원고회사가 주선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고, ② 그밖에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회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비방전화를 하였으며, ④ 피고 방송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 방송사와 공모하여 원고회사를 몰래 취재하는 등 원고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방송이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들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방송사가 피고 학생들과 원고회사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취재한 사실,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피고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내용 및 일부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의 경우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가며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회사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 방송사가 몰래 촬영한 부분(피고 학생들이 원고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의 경우, 원고회사의 건물외경, 사무실 입구 등 원고회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과 원고회사 직원의 얼굴 등은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되었고, 원고회사 직원의 음성 역시 변조되어 방영된 사실은 원고회사도 다투지 않고 있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 시청자들이 위 방송 부분을 보고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여겨

진다.

더욱이 원고회사는 이 사건 방송이 원고회사를 환불도 해주지 아니한 채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 있는 업체로 묘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은 김정은(가명)의 피해사례와 피고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차례로 소개한 다음, 그 중 김정은의 피해사례를 특정하여 김정은을 알선한 국내 업체가 그 피해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점, 곧이어 일부 노동부 등록 업체가 이름만 바꾸어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무등록 업체까지 난무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시청자들에게 해외 인턴십을 알선하는 업체들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그 순서,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말하는 이름만 바꾸어 가며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인다.

(2) 나아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방송은 최근 청년실업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해외 인턴십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등을 다룬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우리는 노예였어요”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학생들이 그 경위가 어떠한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 및 피고 학생들이 출국에 앞서 원고회사로부터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미국 현지 업체에서 주로 허드렛일만을 하다가 돌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 서○○이 2004. 7.경 레스토랑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 학생들이 주로 허드렛일만을 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이 사건 방송 중 일부 노동부 등록 업체가 이름만 바꾸어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무등록 업체까지 난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분의 진실성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가 피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가해업체가 원고회사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 방송사가 피고 학생들과 원고회사 직원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방송사가 위와 같이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학생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가 어떠한 피고 학생들이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의 본

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게 미국에서 주로 허드렛 일만을 하고 돌아온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 학생들이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한 행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행위 등은 타인에게 자신들이 실제 경험한 내용과 피해사례를 호소한 것이거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을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이 버매조 파크 랜치에서의 생활을 수기의 형태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 것일 뿐, 원고회사를 비방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서○○은 위 수기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회사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서○○이 위법하게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 학생들이 원고회

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 학생들이 피고 방송사와 몰래 원고회사를 취재한 행위 및 피고 방송사에게 자신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방송사가 몰래 취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 따라서 피고 방송사가 명예훼손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회사의 피고 학생들에 대한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 판결 3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로 그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6. 2. 15. 자 판결(2005가합18545)

### 사실개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

사)는 부산 모 병원장이자 정신과 의사인 박○○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총국 취재부 소속 강○○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가 지난 2005년 7월 7일 KBS 2 텔레비전 「뉴스타임」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술 깨보니 정신병원』 제하의 방송과 같은 날 KBS 1 텔레비전 「뉴스 9」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 『어느 40대의 잃어버린 4년』 제하의 방송을 통해 원고 병원이 김○○(이 사건의 제보자)을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예를 훼손해 재산적·정신적 손해 및 원고 병원의 3년간 홍보비용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방송은 그 제보자인 김○○의 사례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구청, 경찰서)의 관리가 소홀하며, 위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방송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물론 피고들이, 원고 병원에서의 김○○에 대한 입원치료가 정신보건법령 및 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김○○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취재하고서도 이 사건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은 바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는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도내용을 편집함에 있어 취재된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취재된 원고 병원의 사정을 이 사건 보도 내용

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판 결 문

사 권 : 2005가합18545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Ⅲ 고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연주

2. 강 ○ ○

부산 수영구 남천동 63

KBS부산방송총국(소속 취재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신

변 론 종 결 : 2006. 2. 1.

판 결 선 고 : 2006. 2. 15.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558,9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병원(이하 같은 병원 또는

원고를 포함한 같은 병원의 구성원들을 ‘원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 방송의 실시와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이며, 피고 강○○는 피고 방송사의 소속 취재부 기자로서 다음 나.항 기재 방송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취재하여 보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방송 및 그 내용

(1) 피고 방송사는 2005. 7. 7. KBS 2TV “뉴스타임”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약 1분 32초 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화면 우측 상단의 자막 : 술깨보니 정신병원

•앵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한 40대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이 40대는 그 동안 눈이 거의 실명지경에 이르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고 강○○(화면 아래쪽에 “1999년 4월 김○○ 씨 술 취해 쓰러진 뒤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인계”라는 자막 표시) : 48살 김○○ 씨는 지난 99년 4월 24일 밤 9시 반쯤, 부산 연산동의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김 씨가 눈을 뜬 곳은 부산 △△동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당황한 김 씨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가 직접 와야 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원고 병원 관계자(화면 아래쪽에 “병원관계자 (입원동의는)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아래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라는 자막 표시) :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하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

•피고 강○○ : 보호자는 없지만 직업과 거주자가 있다는 김 씨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화면 아래쪽에 “4년 동안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라는 자막 표시) : 보호자 없는 사람은 길에서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오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는 곳이 정신병원인지, 세계 어떤 나라가... 있는지...

•피고 강○○ : 구청은 매달 80만 원 가량의 병원비만 지불했을 뿐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 뿐 아니라 감독행정기관으로부터도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려한자는 일단 시립의료원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 지침을 어긴 경찰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계자(화면 아래쪽에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됐습니다”라는 자막 표시) :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되었습니다.

•피고 강○○ : 건설근로자였던 김 씨는 4년 동안의 정신병동 생활 이후 말초신경 장애와 실명으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KBS뉴스 강○○입니다.

(2) 그리고 피고 방송사는 같은 날 KBS 1TV “뉴스 9”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다음의 앵커의 소개를 제외하고는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다음날 KBS 1TV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화면 우측 상단의 자막 : 어느 40대의 잃어버린 4년

•앵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 강제 수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2, 12,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병원이 김○○을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손해 및 원고 병원의 3년간 홍보비용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위와 같은 손해액 합계 411,558,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한다.

### 나. 인정사실

#### (1) 원고 병원이 김○○을 인계한 경위

(가) 김○○은 건설근로자로서 특별한 신체적 장애 없이 1998. 8.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였고, 그의 형 김△△가 사망한 이후에는 “김△△”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나) 김○○은 1999. 4. 24. 21:00경 부산 연제구 ○○동 ○○한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관할 연제경찰서 연산2파출소에 의해 행려환자로 원고 병원에 인계되었고, 원고 병원은 관할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다) 위 인계 당시 김○○에게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연제경찰서가 작성한 김○○에 대한 “행려환자 인계서 송부”문서에는, 김○○의 성명란에 “자칭(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직업, 본적, 주소란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견일시 및 당시 개황란에는 “행려환자로 보이고 연고도 이름도 몰라 인계한 것임”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 (2) 원고 병원의 김○○에 대한 입원치료 경과

(가) 김○○은 원고 병원에 인계된 후 1999. 4. 25. 07:20경에 깨어나 그곳이 원고 병원인 것을 알고, 원고 병원 간호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로 그가 왜 병원에 있다고 하며, 병원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였고, 1999. 4. 26.에는 원고 병원에 “내 이름은 김△△가 아니라 김○○이고요, 43세입니다. 누나 집에 지금 연락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나) 김○○은 원고 병원에서 부산 부산진구 ○○동 거주한다는 그의 큰누나의 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냈으나, 그의 큰누나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집에 급한 사정이 있다며 올 형편이 안 되니 혼자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면회를 오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 병원은 김○○에게 알코올 남용, 의존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김○○에 대해 알코올 금단증상에 대한 치료와 만성알코올 의존환자에게서 주로 동반되는 반사회적 성격 및 편집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 병원은 김○○의 입원 후 매 6개월 마다 그의 잔존증상 치료를 위해 계속 입원 치료 심사를 부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그곳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2005. 4. 18.까지 김○○을 입원 치료시켰으나, 그 사이 김○○은 말초신경장애와 시력장애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었다.

(라) 위 입원 기간 중 원고 병원은 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계속 입원 치료 심사 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병원에 인계될 당시 “행려환자 인계서 송부”문서에 기재된 이름인 “김△△”와 연제구청에서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임의로 지정하는 관리번호 등을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였다.

(마) 김○○은 위 입원 기간 중이던 2001. 7.말경부터 다리 마비감을 호소하며 보행장애를 보여, 2002. 1.경부터는 부산의료원 등에 외진을 받은 바

있고, 2002. 2. 15.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말소신경 장애와 시력장애로 부산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04. 4. 초순경에는 원고 병원에서 외출을 나간 바 있고, 같은 달 7.경부터는 시력장애로 인해 부산의료원 등에서 외진을 받은 바 있으나, 위 2004. 4. 초순경의 외출 이외에는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 병원을 나갈 수 없었다.

(3) 피고 강○○의 취재경위 및 보도 후의 정황

(가) 김○○은 원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2005. 6. 30. 피고 방송사 부산방송총국에서 피고 강○○를 만나, 그가 1999. 4. 24. 21:00경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으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정신병원이었고, 그의 이름도 아닌 엉터리 이름으로 4년 동안 외출 한번 하지 못하고 강제 입원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 강○○는 원고 병원, 관할 경찰서, 김○○이 위 입원 전 거주하던 집 주인 박○○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를 하였는바, 그 취재과정에서 원고 병원에서 김○○의 진료를 담당한 서○○ 의사는 피고 강○○에게 김○○이 행려(무연고)환자로서 원고 병원에 인계된 경위와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행려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병원에서 관리한다고 설명하였다.

(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7. 5. 환자의 장기·불법 입원 등 신체의 자유 및 환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경주지역의 모(謀) 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관할 자치단체에게 철저한 관리·감독 마련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후 2005. 7. 8. 김○○의 원고 병원으로의 인계 과정, 원고 병원에서의

신원확인절차 등에서 문제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문제들에 관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행 정신보건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마) 김○○은 이 사건 방송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감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05. 10. 10. 원고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2, 갑 10, 11, 13, 14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6, 갑 16호증의 1 내지 8, 을 2, 3(갑 12호증과 같다)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18, 20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부산고등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일부, 증인 서○○,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 단

(1) 이 사건 방송이 원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은 정신보건 법령에 따라 경찰서로부터 인계되어 응급 입원된

김○○에 대해 알코올 남용, 의존증이 있다고 진단 하였으나, 그에게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확정적 자료도 없고, 달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도 없어, 구청장의 동의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밟아 계속 입원치료 해 주면서 편의상 최초 경찰서로부터 인계 당시 서류에 기재된 “김△△”라는 이름과 의료보험급여를 위해 연제구청에서 부여한 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여 김○○을 관리해 왔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 강○○ 역시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원고 병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 병원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설명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병원(이 사건 방송 시청자들로서는 이 사건 방송에서의 “부산 △△동의 한 정신병원”이 원고 병원임을 능히 특정할 수 있다)에 김○○이 “4년 동안 강제 입원”되었다거나 원고 병원이 그를 “एं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은 원고 병원의 주관적 명예감정 뿐 아니라 원고 병원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 (2)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러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이고, 방송 보도에 있어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등 다소 과장을 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방송이 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기로 한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방송 내용과 피고 강○○의 취재경위 및 보도 후의 정황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제보자인 김○○의 사례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구청, 경찰서)의 관리가 소홀하며, 위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방송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김○○은 1999. 4. 24. 밤 그의 의사에 반해 원고 병원에 입원되어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2004. 4. 초순경 외출을 할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병원에 의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원고 병원에서는 김○○의 진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김△△”라는 이름과 연제구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여 그를 관리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물론 피고들이, 위와 같은 원고 병원에서의 김○○에 대한 입원치료가 정신보건법령 및 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한 것이었고, 또 원고 병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름과 관리번호로 김○○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취재하고서도 이 사건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은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도내용을 편집함에 있어 취재된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취재된 원고 병원의 사정을 이 사건 보도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러므로 원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방송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 근 수  
판사 최 우 진  
판사 류 종 명

